

도시관리계획(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44호(2025.05.01.)로 결정(변경)된 「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」 내 마포구 동교동 180-25번지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 변경(경미한 사항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8월 28일
마 포 구 청 장

1. 결정(변경) 취지

-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44호(2025.05.01.)로 결정(변경)된 「마포지구 지구단위 계획」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조서에 마포구고시 제2023-54호(2023.03.30.)로 결정(변경)된 동교동 180-25번지의 공동개발 변경사항이 미반영되어 오기 정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(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경미한 사항)과 지형도면을 고시함

2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

-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가구번호	공동개발면적(m ²)	계획내용	비 고
기정	SR-16	638.5	공동개발(지정): ㉠:180-25,7,28,26,6,8,27 공동개발(권장): ㉠+180-9,11,10,31,29,32,12,30	공동개발(지정): 부정형, 과소필지(개발불가) 공동개발(권장): 간선변 적정개발규모 유도
변경	SR-16	638.5	공동개발(지정): ㉠:180-7,28,26,6,8,27 공동개발(권장): ㉠+180-25,9,11,10,31,29,32,12,30	공동개발(지정): 부정형, 과소필지(개발불가) 공동개발(권장): 간선변 적정개발규모 유도

○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	비 고
기정	◦ 공동개발(지정) - @:180-25,7,28,26,6,8,27	◦ 마포구고시 제2023-54호(2023.03.30.)로 결정(변경)된 「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」 내 동교동 180-25번지의 공동개발 변경사항이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44호(2025.05.01.)에 미반영되어 오기 정정을 위한 변경	-
변경	◦ 공동개발(지정) - @:180-7,28,26,6,8,27		
	◦ 공동개발(권장) - @+180-9,11,10,31,29,32,12,30		
	◦ 공동개발(권장) - @+180-25,9,11,10,31,29,32,12,30		

○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사항 : 변경없음

3. 관계도면 : 첨부 지형도면 참조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4.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마포구청 도시계획과(02-3153-9373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